

사면제도 개선해야

올해도 광복절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연례행사인 광복절특사가 단행됐다. 정부는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 등 2천493명을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했다. 이제 광복절특사는 보통명사처럼 되었다. 오죽하면 같은 제목의 영화까지 만들어졌겠는가. 정부·여당이 설명한 사면의 취지도 국민들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이번 사면조치로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과 서청원 미래연합(전 친박연대) 대표,故노무현 대통령 친형 노건평 씨,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여정부의 핵심 정치인들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恩典을 입었다.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이들을 사면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반면, 이들의 사면이 가져올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면된 경제인들이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또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이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불과 10여년전 이들 재벌들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를 불러왔고, 이는 다시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경기악화로 이어져 수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당했다. 또 삼성사건의 핵심당사자중의 하나인 이학수 고문과 김인주 전 사장의 경우 소위 '힘있고 백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승망망이 처벌만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평가다. 더구나 이학수 고문은 안기부 X과일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견희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검찰

정 병 호

-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회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권력기관의 실력자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선거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람이다. 지난 번 삼성 이견회 회장의 단독 사면과 그 자신들에 대한 이번의 사면조치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경제인들을 사면하면서 정부는 의례 경제살리기를 내세운다. 그러나 한 신문사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비위 경제인들의 사면이 경제살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치적 이유로 사면이 요청된 서청원 전 대표와 노건평씨도 사면해야 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 먼저 서청원 전대표를 사면하는 주된 이유는 집권당의 계파인 친박과 친이라는 정적들간의 화해국면 조성일뿐, 국민통합, 사회통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더구나 그는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면된 뒤 또 지난 총선에서 무려 32억여 원의 공천현금을 받아 우리 정치를 다시 한번 후퇴시킨 사람이다. 여야 국회의원 250여명씩이나 사면 요청 탄원서에 서명을 한 상태라고 하니, 우리 국회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공범의식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통령은 이번 사면조치 전에 현 정권 아래서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서청원 전대표를 사면함으로써 식언을 한 꼴이 되었다. 노건평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 국민의 관점에서는 그는 표적사정의 희생자라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치부한 자일뿐이다. 그의 사면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 성격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국가가 형사범 한 명을 처벌하려면 수사부터 기소, 재판, 수감까지 적잖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들어간다. 사면은 이 모두를 허사로 만들어 버린다. 사면할 거면 뭐하러 그 많은 수고를 들인단 말인가? 사면을 남발하면, 도대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특히 이른 바 힘 있고 뺨 있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사면된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법냉소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편으로 법질서유지를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편 설득력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사면은 전제군주제의 유물이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 선진국에서는 사면을 극도로 자제한다. 독일은 지난 60년간 사면을 네 번밖에 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은 아예 사면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서도 벌써 다섯 차례, 거의 470만 명을 사면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면제도의 오·남용 방지책 강구’와는 정반대의 길로 간 셈이다. 여당은 지난 2004년 야당 시절 사면 1주일 전에 대상과 죄의 종류 등을 국회에 미리 알려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형 확정 이후 1년이 넘지 않은 자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주도한 적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사법권의 부당한 행사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후의 보호 장치라는 사면제도의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도록 사면의 법적 제도적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뇌물죄와 같은 공무원 범죄와 성폭력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사면을 금지하고, 또 형의 만기로부터 일정기간 이전에는 사면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내년의 광복절부터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특사가 사라지길 기대한다. 그래야 최근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사회에 걸맞게 될 것이다. 또 그래야 일제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게 될 것이다.